

2024년도 제9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등록 일정 공고

2024년도 제9회 기간제근로자(난민통번역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
채용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10월 28일

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장

1. 대상자

최종합격자

2409-0002 김○○

예비합격자

2409-0007 마○○

2. 채용등록 안내

대상: 최종합격자 1명

일시: 2024. 10. 29.(화) ~ 10. 31.(목), 09:00 ~ 18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)

장소: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7층, 총무과

※ 주소: (08013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

□ 추후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, 응시요건 부적합,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□ 최종 합격자 등록 시 구비 서류

- 기본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최종학력 입증서류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가정법원 발행) 1부

※ 해당사항 없어도 제출

-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) 1부
※ 검사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므로, 영수증 등 수검 증빙서류 제출 요함
- 반명함판(3cm×4cm) 사진 2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- 통장 사본 1부(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)
-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**【별첨 1】**
- 공정채용확인서 1부 **【별첨 2】**

□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총무과(02-2650-6221)로 연락 바랍니다. 끝.

【별첨 1】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시행 2024년도 제9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<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>

1. 피 성년 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4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

【별첨 2】

공정채용 확인서

(응시자용)

작성자 인적사항

생년월일 :

성 명 :

※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확 인 사 항	해당여부	
	예	아니오
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,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)촌 이내 / 소속기관 : 근무부서 : 이름 :		

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서명 (인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
① 수집·이용목적 : 채용경로 조사 및 「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
② 수집·이용항목 :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
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 동안 보유

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